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2. 통칙 마. 중 “원인사실”을 “원인사실(법 제429조제4항의 경우에는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규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과 제4항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 위반이 동일 계약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법 제4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감안사유	위반행위의 중요도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0.5	100분의 0.4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0.4	100분의 0.3	100분의 0.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0.3	100분의 0.2	100분의 0.1

* 단, 집합투자증권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운용기간(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12’를 부과비율에 곱하여 적용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나.에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등 7.가.(3)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는 아래 위

반비율의 2배를 기준(회사의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의인 경우는 제외)으로 판단한다.

구분	중요도 위반비율	상	중	하
		A	16% 이상	16% 미만 4% 이상
B	위반금액 ÷ (회사규모금액/규모조정계수)	64% 이상	64% 미만 16% 이상	16% 미만
C		80% 이상	80% 미만 20% 이상	20% 미만
D		-	60% 이상	60% 미만

규모금액 (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 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0.4	-	
100	300	0.6	+ 0.00100000	×
300	700	0.8	+ 0.00050000	×
700	1,000	1.0	+ 0.00066667	×
1,000	2,000	1.2	+ 0.00030000	×
2,000	5,000	1.5	+ 0.00010000	×
5,000	10,000	1.8	+ 0.00006000	×
10,000	20,000	2.1	+ 0.00003000	×
20,000	50,000	2.4	+ 0.00002000	×
50,000	100,000	3.0	+ 0.00001200	×
100,000	200,000	3.6	+ 0.00000700	×
200,000	500,000	4.3	+ 0.00000233	×
500,000	1,000,000	5.0	+ 0.00000400	×
1,000,000	2,000,000	7.0	+ 0.00000300	×
2,000,000	-	10.0		

주1. 유형 A,B,C,D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

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C유형: 위법행위가 ①특수관계자 거래, ②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한다), ③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와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
- D유형: 위법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 목 내지 다 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

주2. 회사규모금액은 상기 표의 유형 A와 C(D유형 중 주석기재사항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B와 D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주3. 규모조정계수는 기본 + (보간율 × 회사규모금액 범위액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억원 단위금액)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회사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나.(2)(가)의 주5) 중 “변경위반”을 “변경 보고 위반”으로 하고, “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를 “위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보고의무위반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로 한다.

별표 제2호 4. 부과비율의 산정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을 한 경우 ·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 삭 제 >

< 삭 제 >

별표 제2호 5. 과징금의 감면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

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부과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부과과징금 = 위반행위 기간 보수금액 X (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수수료/위반행위 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수수료)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별표 제2호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에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그 소속단체를 포함),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수액의 2배 금액 또는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이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도 제6호에 따른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최고액 100분의 50에 감면사유를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별표 제2호의2의 1. 목적 중 “제36호”를 “제35호의4(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35호의5·제35호의6·제35호의7·제35호의8·제36호”로 한다.

별표 제2호의2의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가.(1) 중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을 “(법 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 제35호의8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 및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로 한다.

별표 제2호의2의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나.(1) 표 외의 부분 중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 유형	감경사유
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 투자광고 수단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 모집 개시 전 정보게재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달 시 증권발행 취소 ⑦ 온라인소액증권발행 모집 게재 정보 최신성 유지	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⑧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⑨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⑩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류 제출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결산서류 게재

별표 제2호의2의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나.(2) 표 외의 부분 중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 행위”를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의2의 5. 과태료 부과 면제 나. 중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 행위”를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3호 3. 조치기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p> <p>1. (생략)</p> <p>2. 통칙</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이종의 <u>원인사실</u>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바. ~ 사. (생략)</p> <p>3. (생략)</p> <p>4. 부과비율의 산정</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1) ~ (4)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p> <p>1. (생략)</p> <p>2. 통칙</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원인사실(법 제429조 제4항의 경우에는 법 제14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규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과 제4항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 위반이 동일 계약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u> ----- -----.</p> <p style="padding-left: 20px;">바. ~ 사. (생략)</p> <p>3. (생략)</p> <p>4. 부과비율의 산정</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1) ~ (4)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5) <u>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법 제4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u></p>

위반행위의 중요도	상	중	하
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 분의 0.5	100 분의 0.4	100 분의 0.3
해당사항 없음	100 분의 0.4	100 분의 0.3	100 분의 0.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 분의 0.3	100 분의 0.2	100 분의 0.1

* 단, 집합투자증권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운용기간(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12’를 부과비율에 곱하여 적용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등 7.가.(3)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는 아래 위반비율의 2배를 기준(회사의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의인 경우는 제외)으로 판단한다.

중요도 구분 \ 위반비율		중요도		
		상	중	하
A	위반금액 ÷ (회사 규모 조정 금액/규정 모수) 계수)	16% 이상	16% 미만 4% 이상	4% 미만
B		64% 이상	64% 미만 16% 이상	16% 미만
C		80% 이상	80% 미만 20% 이상	20% 미만
D		<u>160% 이상</u>	<u>160% 미만</u> <u>40% 이상</u>	<u>40% 미만</u>

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등 7.가.(3)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는 아래 위반비율의 2배를 기준(회사의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의인 경우는 제외)으로 판단한다.

중요도 구분 \ 위반비율		중요도		
		상	중	하
A	위반금액 ÷ (회사 규모 조정 금액/규정 모수) 계수)	16% 이상	16% 미만 4% 이상	4% 미만
B		64% 이상	64% 미만 16% 이상	16% 미만
C		80% 이상	80% 미만 20% 이상	20% 미만
D		=	<u>60% 이상</u>	<u>60% 미만</u>

규모금액 (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 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0.4	-	
100	300	0.6	+	×
300	700	0.8	0.00100000	×
700	1,000	1.0	+	×
1,000	2,000	1.2	0.00050000	×
2,000	5,000	1.5	+	×
5,000	10,000	1.8	0.00066667	×
10,000	20,000	2.1	+	×
20,000	50,000	2.4	0.00030000	×
50,000	100,00	3.0	+	×
100,00	0	3.6	0.00010000	×
0	200,00	4.3	+	×
200,00	0	5.0	0.00006000	×
0	500,00	<	+	
500,00	0		0.00003000	
0	=		+	
<신설>			0.00002000	
<신설>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주1. 유형 A,B,C,D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A유형: (생략)
-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모금액 (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 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0.4	-	
100	300	0.6	+ 0.00100000	×
300	700	0.8	+ 0.00050000	×
700	1,000	1.0	+ 0.00066667	×
1,000	2,000	1.2	+ 0.00030000	×
2,000	5,000	1.5	+ 0.00010000	×
5,000	10,000	1.8	+ 0.00006000	×
10,000	20,000	2.1	+ 0.00003000	×
20,000	50,000	2.4	+ 0.00002000	×
50,000	100,00	3.0	+ 0.00001200	×
100,000	0	3.6	+ 0.00000700	×
200,000	200,00	4.3	+ 0.00000233	×
500,000	0	5.0	+ 0.00000400	×
1,000,000	500,00	7.0	+ 0.00000300	×
2,000,00	0	10.		
0	1,000,00	0		
	0			
	2,000,00			
	0			
	-			

주1. 유형 A,B,C,D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A유형: (생략)
-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 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C유형: 위법행위가 ①특수관

· C유형: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 · 질권 설정된 자산 등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채권 관련 지급보증·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식사항인 경우

· D유형: (생략)

주2. 회사규모금액은 상기 표의 유형 A와 C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B와 D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 단서 신설 >

계자 거래, ②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한다), ③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와 관련한 주식사항인 경우

· D유형: (생략)

주2. 회사규모금액은 상기 표의 유형 A와 C(D유형 중 주식기재사항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B와 D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심사·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주3. (생략)

주3. (생략)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주1)}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주2)}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 고발	검찰 통보	경고 이하
증권신고서	증자 등의 금액 비율 ^{주3)}	100% 이상	25% 이상 100% 미만	25% 미만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 비율 ^{주4)}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30% 미만
5%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비율 ^{주5)}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주6)} 이상 10% 미만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주1)}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주2)}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 고발	검찰 통보	경고 이하
증권신고서	증자 등의 금액 비율 ^{주3)}	100% 이상	25% 이상 100% 미만	25% 미만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 비율 ^{주4)}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30% 미만
5%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비율 ^{주5)}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주6)} 이상 10% 미만

주1) ~ 주4) (생략)

주5)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보고의무 위반, 보유목적 변경위반, 보고의무위반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주의이상 조치 또는 2회이상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등 담보제공계약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

주6) (생략)

(나) 생략

(3) 생략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주1) ~ 주4) (생략)

주 5)

--

-변경 보고 위

반, -----

-----위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보고의무위반비율

이 5%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분

류

주6) (생략)

(나) 생략

(3) 생략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분	조정 기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을 한 경우 ·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p>< 신 설 ></p>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p>· < 단서 신설 ></p> <p>· <u>단순투자목적의 주식취득의 경우*</u></p>

* 5%보고 위반의 경우에 한함

(가)~(다) (생략)

구분	조정 기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을 한 경우 ·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 <u>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혹은 미보고한 경우</u>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u>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u> <p>· < 삭제 ></p>

< 삭제 >

(가)~(다) (생략)

5. 과징금의 감면

(1)~(6) (생략)

<신설>

6. 생략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

5. 과징금의 감면

(1)~(6) (생략)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생략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단서 신설 >

(2) 생략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그 소속단체를 포함),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부과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부과과징금 = 위반행위 기간 보수금액 X (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수수료/위반행위 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수수료)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2) 생략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그 소속단체를 포함),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발행인과 당해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다.

나.~라. (생략)

8.~10. (생략)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수액의 2배 금액 또는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이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도 제6호에 따른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최고액 100분의 50에 감면사유를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나.~라. (생략)

8.~10. (생략)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9조제1항제20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39의2호·제39의3호·제39의4호, 제3항제7호·제8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생략)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9조제1항제20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35호의4(법 제117조의7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이하 같다)·제35호의5·제35호의6·제35호의7·제35호의8·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39의2호·제39의3호·제39의4호, 제3항제7호·제8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생략)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

정

가. 가중사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 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생략)

나. 감경사유

(1)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정

가. 가중사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 제35호의8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 및 법 제449조 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생략)

나. 감경사유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

감경할 수 있다.

위반 유형	감경사유
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 <신 설>	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④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류 제출 <신 설>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2)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기관 인지 전에 시정 또는 신고한 경우, 당해 예정금액에

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 유형	감경사유
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 ④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투자광고 수단 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모집 개시 전 정보공개 ⑥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달시 증권발행 취소 ⑦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모집 게재 정보 최신성 유지	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⑧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⑨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⑩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류 제출 ⑪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결산서류 게재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기관 인지 전

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가. (생략)

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2. (생략)

3. 조치기준

판단 결과	조치기준	
A	고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에 시정 또는 신고한 경우, 당해 예정금액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가. (생략)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2. (생략)

3. 조치기준

판단 결과	조치기준	
A	고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u><신 설></u>	

4.~8. (생략)

	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준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4.~8.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88